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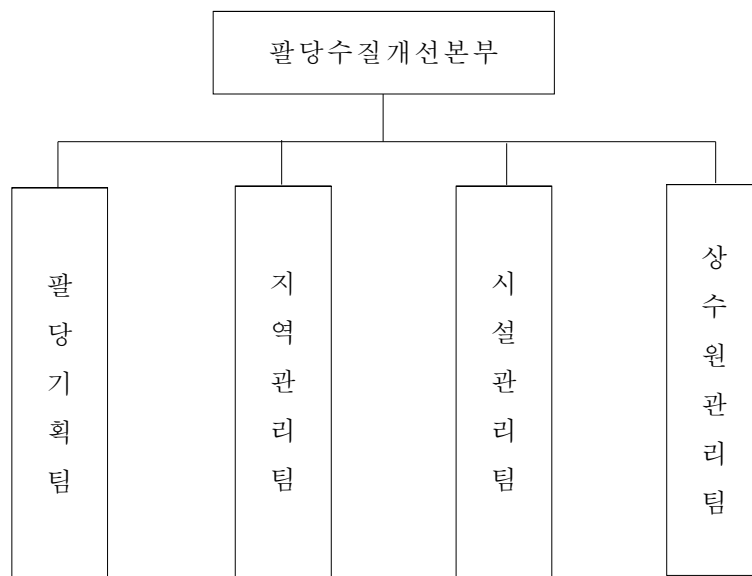
<업무보고 : 팔당수질개선본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I.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

□ 기 구 : 1본부 4팀



□ 정 원 : 37명/현원 40명

구 분	계	3급	5급	6급	7급	8급	기능
계	37	1	5	8	5	1	17
팔당기획팀	8	1	2	2	2		1
지역관리팀	5		1	3		1	
시설관리팀	4		1	1	2		
상수원관리팀	20		1	2	1		16

(파견근무 1명, 근무지지정 2명)

※ 청원경찰 14명, 공익근무요원 31명

주요기능

부 서 명	주 요 업 무
팔당기획팀	· 팔당수질개선종합대책 수립 추진 · 오염총량관리제 추진 · 한강수계관리기금 계획수립 및 관리 · 환경공영제 추진 및 공중화장실 업무 · 팔당특별대책지역 관련 현황(통계)자료 관리
지역관리팀	· 경안천 수질개선사업 추진 · 호소 수질관리 및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지원 · 폐수배출사업장 관리대책 추진 및 지도단속
시설관리팀	· 하수처리장 건설, 고도 및 슬러지 처리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운영 관리 ·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 관련 업무 · 팔당유역 통합하수관리 시범사업 추진 ·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추진
상수원관리팀	·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 · 상수원보호구역의 불법행위 단속 및 시설관리 ·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관리(하남, 남양주, 광주, 양평) ·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 상수원오염원의 실태조사, 부유쓰레기·수초제거 등 · 수질오염사고예방대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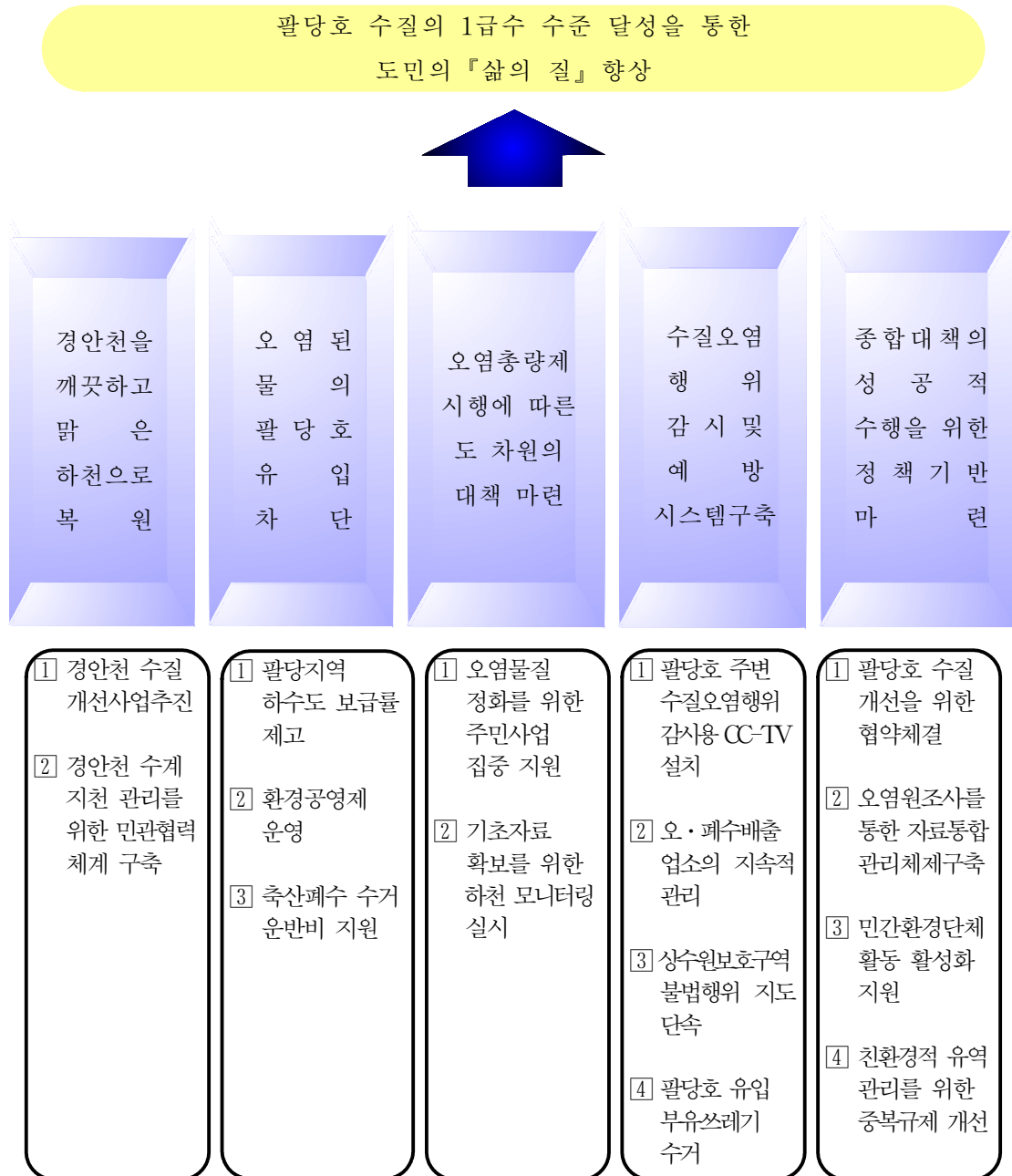
재정현황

□ 2006년 세출예산 : 50,950백만원

※ 일반회계 46,059, 특별회계 4,891

구 분	사 업 명	사업비	비 고
일반회계	경상적 경비, 자산취득비	93	2회추경
"	팔당지역 오염원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206	2회추경
"	팔당유역 하수도보급률 제고 용역	350	2회추경
"	팔당호수계 중소하천 수질개선사업	120	2회추경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695	2회추경
"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2,903	
"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251	
"	오수처리시설 개선비 지원	2,000	
"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지원	456	
"	팔당호주변 토지매입	2,692	
"	마을하수도정비사업	19,550	(안성 포함)
"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16,743	(하남 포함)
특별회계	팔당호관리	4,891	한강수계기금
계		50,950	

II. 정책목표



Ⅲ. '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경안천을 깨끗하고 맑은 하천으로 복원
2. 오염된 물의 팔당호 유입 차단
3.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도 차원의 대책 마련
4. 수질오염 행위 감시 및 예방 시스템 구축
5. 종합대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

1. 경안천을 깨끗하고 맑은 하천으로 복원

- 경안천 수질개선사업 추진
- 경안천수계 지천 관리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경안천 수질개선 사업 추진

경안천 여건에 적합한 자연정화사업 추진과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팔당호 유입 오염원 저감

□ 사업개요

-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지원
 - 사업기간 : '07. 1월 ~ '09. 12월
 - 사업량 : 8.9km
 - 사업비 : 61,308백만원(국비 38,518, 도비 9,316, 시비 13,266, 기금 208)
 - 사업내용
 - 하천유지용수 확보 : 용인하수처리장 방류수 상류펌핑(15.6km, 약 3만톤)
 - 친환경 생태호안 : 8.9km(저수호안)
 - 고수부지 친수 공간 : 186,353㎡(생태공원, 자연학습원, 산책로 등)
 - 생태 하천 복원 : 126,380㎡(인공습지 조성, 여울 설치 등)

□ 추진실적

- 습지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지원(35억원) : '06. 10월
-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06. 10월
- 생태정화 습지 조성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06. 10월

□ 향후계획

-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06. 12월
-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공사착공 : '07. 1월
- ※ 수질개선효과 : BOD 4.3ppm → 2.5ppm(42% 감소 예상)

경안천수계 지천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팔당호로 유입되는 3개 하천 중 오염도가 가장 높은 경안천 수계 지천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수질개선에 기여

□ 사업개요

- 경안천 개요

하천연장	1일 유입량	오염도(BOD)	발원지
49.3km	474천톤	3.0mg/ℓ	용인시 호동

- 지천 현황 : 146개소
 - 지방2급 하천 : 38개소(용인시 14, 광주시 23, 용인·광주 연계 1)
 - 소 하 천 : 108개소(용인시 34, 광주시 74)
- 중점 추진사항
 - 1회사 - 1하천 책임관리제 운영
 - 『맑은물 지킴이』 운영
 - 경안천 지천별 『책임 담당 공무원제』 운영 실시

□ 추진실적

- 1회사-1하천 지정 관리 : 3개 업체
 - 삼성 에버랜드(신대천), 롯데칠성(쑈메산골천), 빙그레(구석말천)
 - ※ 1회/월 정화활동 등 환경친화적인 하천 가꾸기 운동
- 지천별 『맑은물 지킴이』 및 『책임담당공무원』 지정 : 각 50명('06. 10. 25)
 - 하천수의 모니터링 실시 및 수질오염 행위 감시·신고활동
- 경안천 살리기 운동본부 발대식 개최('06. 11. 10)

□ 향후계획

- 『맑은물 지킴이』, 『1회사-1하천 지정관리』, 『지천별 책임담당 공무원』이 지속적인 하천감시 및 자연정화 활동 전개

⇒『경안천 살리기 운동본부』와 협력하여 추진

2. 오염된 물의 팔당호 유입 차단

- 팔당지역 하수도 보급률 제고
- 환경공영제 운영
-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지원

팔당지역 하수도보급률 제고

팔당유역의 평균 하수도 보급률(61.2%)이 도 평균(81.9%) 보다 낮은 실정으로 하수처리시설 확대설치를 통한 팔당호 수질개선 도모

□ 사업개요

-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설치계획(2010년)

(단위 : 개소, 천톤/일)

구 분	총 계		하 수 처 리 장		마 을 하 수 도		평 균 보급률(%)
	개 소	시설용량	개 소	시설용량	개 소	시설용량	
계	229(17)	623.24	71(17)	602.52	158	20.72	
운 영 중	110	364.81	39	357.85	71	6.96	61.2
추 진 중	63(16)	136.52	19(16)	130.87	44	5.65	73.5
설치계획	56(1)	121.91	13(1)	113.80	43	8.11	90.0

※ ()안은 증설사업

- 재원 투자계획

(단위 : 억 원)

구 분		계	국 고	도 비	시·군비	기 금
계		5,938	3,690	727	119	1,402
'07~'10년 추진중 시설		3,343	2,101	383	70	789
추가 설치시설 ('10년까지)	소 계	2,595	1,589	344	49	613
	하수처리장	2,270	1,589	68	-	613
	마을하수도(시범)	325	-	276	49	-

□ 추진실적

- 2006년 55개소(하수종말처리장 24, 마을하수도 31) 사업 추진

- 팔당유역 하수도보급률 제고방안 연구용역 사업비 확보(350백만원)

□ 향후계획

- 팔당유역 7개 시·군 하수도보급률 제고방안 연구용역 : '07. 9
 - ※ 용역과 병행하여 팔당유역 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 시·군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관련 최대한의 하수처리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
- 환경부를 상대로 기본계획 변경 승인 및 국고지원 협의

환경공영제 운영

전문적인 기술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운영관리가 미흡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개선 및 위탁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도모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경기도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조례」
- 대상시·군 : 팔당지역 7개 시·군(용인, 이천, 광주, 여주, 양평, 남양주, 가평)
- 지원대상 : 3,037(음식·숙박업소, 공동주택, 비영리시설, 근생 등)
- 총사업비 : 11,658백만원(도비 50%, 시·군비 10%, 자부담 40%)
 - ※ 환경공영제 사업현황

구 분		계	용 인	광 주	이 천	여 주	양 평	남양주	가 평
사 업 량		3,037	438	839	489	180	637	205	249
사업비	계	11,658	1,590	2,290	1,992	1,170	2,764	708	1,144
	위탁비	7,658	802	1,980	1,116	536	1,372	708	1,144
	개선비	4,000	788	310	876	634	1,392	-	-

□ 추진실적

- 환경공영제 사업을 통한 하천 및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
 - 수질기준 초과시설 : '04년말 52% → '06년 8월말 6%(△46%)
 - 방류수 수질(BOD) : '04년말 35ppm → '06년 8월말 9.6ppm(△25.4ppm)
- 위탁관리 실명제(안내표지판) 시행으로 환경공영제에 대한 주민인식 제고
 - 환경공영제 인지도 제고(설문조사) : '04년 54% → '06년 81%(27% 상승)

□ 향후계획

- 환경공영제 사업에 국비지원 지속 추진
- 경안천 수계 및 팔당 상류지역으로 사업대상 확대 추진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지원

축산폐수는 고농도 폐수로 방류 시 하천 수질오염에 큰 위험이 되므로 처리비용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수거 운반비를 지원하여 적정 처리를 통한 수질오염 방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 1월~12월
- 지원대상 : 7개 시·군(팔당특별대책지역)
 -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이 설치된 시·군에 지원('04년부터 지원)
- 사업비 : 714백만원(도비 357백만원, 시·군비 357백만원)
- 지원기준 : 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6,000~10,000원/톤당 지원
- 지원근거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 가축사육현황

축종별	계		허가대상		신고대상		규제미만		비고
	농가	마리	농가	마리	농가	마리	농가	마리	
계	2,163	398,856	713	361,310	919	34,186	531	3,360	
한육우	1,484	30,853	226	14,114	735	14,287	523	2,452	
젖 소	428	22,498	284	17,262	139	5,138	5	98	
돼 지	251	345,505	203	329,934	45	14,761	3	810	

□ 추진실적

- 지원농가수 : 603농가 63,114톤
- 예산 집행 : 도비 100% 교부(357백만원)
- 사업추진사항 점검을 통한 사업비 적정 재배분

□ 문제점

- 2012년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금지로 허가대상 농가의 축분처리 애로

□ 향후계획

-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공공처리시설 활용을 위한 법개정 건의

-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3.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도 차원의 대책 마련

- 오염물질정화를 위한 주민사업 집중지원
-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하천 모니터링 실시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주민사업 집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사업비 지원 시 직접지원 사업은 다양하고 환경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사업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질개선에 기여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한강수계법 제11조(동법시행령 제11, 12, 13조)
- 재 원 : 한강수계기금
- 지원대상 : 8개 시·군(용인, 남양주, 이천, 광주, 하남, 여주, 양평, 가평)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99. 8. 9) 전부터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해 온 자 중 토지나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
- 대상사업 : 토지, 건물 등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지원사업
 - 일반지원사업 : 농기구 수리시설, 상수도시설, 환경교육관 설치, 개별 농가 분뇨 또는 오수처리시설 등
 - 직접지원사업 : 주택개량비, 학자금, 장학금, 전기·전화료, 가전제품·농자재 구입비 등

□ 추진실적

- 연도별 사업건수 및 지원금액

(건수/백만원)

연 도 별	총 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사업건수	8,994	2,340	2,633	1,956	2,065
사업금액	263,097	65,802	65,891	65,859	65,545

□ 향후계획

-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 ⇒ 민원다발지역의 숙원사업 우선 시행
- 광역적인 대규모 사업 시범 추진 ⇒ 우수사례 발굴 전파
- 지역실정에 맞는 필요한 사업을 발굴 지원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하천 모니터링 실시

도내 하천에 대한 수질 및 유량 등의 기초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향후 총량관리제 의무시행에 대비

□ 추진개요

- 하천현황 : 2,689개소(국가 15, 지방하천 502, 소하천 2,172)
 - 팔당지역 7개 시·군 : 1,221개소(국가 6, 지방하천 255, 소하천 960)
- 추진기간 : '07. 1~계속
- 방 법 : 도 보건환경연구원 주관
 - ※ 측정자료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D/B화 관리
- 소요예산 : 1,000백만원/년(전액 도비)
- 세부내용
 - 측정지점 : 26개 시·군 551개 지점을 단계별로 추진(안성천 수계 등도 포함)
 - 측정항목 : 14개 항목(수온, pH, 전기전도도, DO, BOD, COD, SS, T-N, NH₃-N, NO₃-N, NO₂-N, T-P, PO₄-P, Chl-a) 및 유량
 - ※ 현재 총량관리 항목은 1개 항목(BOD)이나 향후 확대시행에 대비
 - 측정주기 : 매월 2회 측정(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은 연간 30회 이상)

□ 추진실적

- 도내 하천 모니터링 계획 수립 : 보건환경연구원('06. 10. 2)

□ 활용계획

- 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제가 시행되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시·군별 목표수질 설정, 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 오염부하량 배분, 총량제 이행 평가서 작성 등의 업무에 활용
-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기초시설 등의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에 활용

4. 수질오염 행위 감시 및 예방 시스템 구축

- 팔당호 주변 수질오염행위 감시용 CC-TV 설치
- 오·폐수배출업소의 지속적 관리
-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지도·단속
- 팔당호 유입 부유쓰레기 수거

팔당호 주변 수질오염행위 감시용 CC-TV 설치

본부 상황실 및 선착장등에서 수시로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팔당호 주변 취약지역에 CC-TV

□ 사업개요

- 소요예산 : 1,002백만원(도비 250, 기금 752)
- 팔당호 유입지천별 CC-TV 설치현황 및 계획

구 분	CC-TV 설치현황(단위 :개소)			모니터 설 치	비 고
	계	기설치	신규설치		
합 계	18(4)	2	16(4)	5개소	본부 상황실 선착장, 초소
경 안 천	6(3)	-	6(3)		
남 한 강	4(1)	-	4(1)		
북 한 강	8	2(능내리)	6		

□ 추진실적

- CC-TV 설치 추진계획 수립 : '06. 8
- CC-TV 설치 실시설계 용역 공고 : '06. 11

□ 향후계획

- CC-TV 설치공사 완료 : '06. 12월 중
- CC-TV 설치 운용효과 분석을 통하여 취약지역 추가 설치

□ 기대효과

- 낚시, 야영, 세차, 폐기물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감시 수질오염 예방

오·폐수배출업소의 지속적 관리

팔당호에 유입되는 산업폐수 및 오수의 오염 부하량을 최소화함은 물론 주민과 기업체의 친환경 마인드를 제고시켜 상수원의 수질 개선 도모

□ 사업개요

○ 업 소 수 : 22,570개소(폐수 981, 오수 21,589)

- 폐수 배출업소

계	제 지	피 혁	금 속	화 학	식 품	기 타
981	4	1	11	19	186	760

- 오수 처리시설

계	음식점	숙박업	종교시설	관공서	공동주택		빌딩 (근생)	기 타
					아파트	빌라		
21,589	1,329	261	297	44	32	859	2,617	16,150

○ 관계법규 :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환경부 훈령 제651호)

□ 추진실적

○ 오·폐수 배출시설의 정기·수시점검 실시 : 3,647개소(폐수 1,466, 오수 2,181)

○ 위반업소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 실시 : 406개소(폐수 159, 오수 247)

- 폐수(159개소) : 개선명령 73, 조업정지 18, 사용금지 7, 기타 61(병과 고발 44)

- 오수(247개소) : 개선명령 236(과태료 : 234건/182백만원), 기타 및 고발 11

※ 개선명령과 과태료 병행처분(오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등) 실시

○ 환경친화기업으로의 전환 : 4개소

□ 향후계획

○ 기업 스스로 자율적인 점검 유도(자율점검업소 운영)

○ 팔당유역 배출업소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 폐수 배출업소별 등급 설정 차등 관리 실시

※ 관계법규 위반횟수가 잦은 적색업소 등에 대하여는 집중관리

○ 영세업소 및 문제업소에 대한 기술지원 실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지도·단속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증가된 행락객들의 불법적인 수질오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황근무 및 순찰계도 활동 강화

- 단속인원 : 공휴일 인원보강(6명 → 15명)
- 단속지역 : 보호구역 → 보호구역 밖에까지 단속

□ 개 요

- 보호구역지정 : 1975. 7. 9(경기도 공고 제193호)
- 행정구역 : 3시·1군, 8면·1동
- 면 적 : 158.8km²(남양주 42.4, 하남 7.1, 광주 83.6, 양평 25.7)
- 인 원 : 54명(사무실 7, 선착장 12, 청경 14, 공익 31)
 - 공휴일 상황근무 및 순찰 단속인원 강화
(상황근무 1명→2명, 육상 4명→10명, 선착장 1명→3명)
 - ※ 야간 4명 고정배치 및 공익요원 31명 별도 근무

□ 추진실적(2006. 11. 3 현재)

- 단속 및 고발조치 : 총 5,640건(고발 51건, 계도 5,589)
 - 고발 51건(낙시 14, 어패류 채취 3, 취사, 31, 투기행위 3)

□ 문 제 점

- 낙시, 어패류 채취, 취사, 행락, 세차 등 수질오염 불법행위는 그동안의 단속 및 홍보로 인식이 전환 되어 감소 추세에 있으나
- 무허가 식당 및 불법 건축물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 근절되지 않아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음

□ 향후계획

- 각종 오염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순찰 및 단속 강화
 - 낙시 금지구역 지정 확대를 통한 수질 오염원 사전 차단 등
- 무허가식당, 건축물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군간 합동 교체단속 실시

팔당호 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 장마철 집중호우로 한강수계 상류로부터 유입되어 팔당댐을 중심으로 분포·적체된 부유쓰레기 적기 수거처리
- 동절기 고사되어 수질오염원이 되고 있는 부유수초 제거

□ 사업개요

- 수거대상 : 장마철 부유 쓰레기, 수초 등
- 유 입 원 :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 상류하천
- 동원인력 및 장비
 - 인 력 : 15명/일(사무소, 선착장 직원 등)
 - 장 비 : 10종(청소선 5척, 수초제거선 4척, 집게차 1대)
- 예 산 액 : 150백만원

□ 추진실적(2006. 11. 3 현재)

- 부유쓰레기(폐기물 포함) 수거 294톤
 - 인력동원 : 총 1,970명(연인원)
 - (부유쓰레기 수거 1,800명, 분리작업 170명)
 - 물 개구리밥 등 수초 수거 : 68톤(10월 21톤, 11월 47톤)
- ※ 2005년 부유쓰레기 처리 : 총 2,463톤(수초 167톤)

【 쓰레기 감소 사유 】

- 소양호, 충주호 등 상류 댐의 수위 조절 및 팔당댐 전력량 확보를 위한 방류량 조정으로 부유쓰레기 감소

□ 향후계획

- 선별 분리된 쓰레기는 12월중 매립지로 처리
 - 폐 목재 등은 희망 농가에 배부
- 수초제거 작업은 10월~익년도 2월까지 200여톤 제거
 - 희망 농가에 유기농 비료로 재활용 보급

5. 종합대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

-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협약체결
- 오염원조사를 통한 자료통합 관리체제구축
- 민간·환경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 친환경적 유역관리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한 협약 체결

경기도와 서울·인천시, 7개 시·군, 환경단체 간의 수질개선을 위한 협약 체결 추진

□ 추진개요

- 대 상 : 협약체결을 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업무
- 협약사항 : 도와 해당 기관·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협약방식 : 해당 기관·단체장간 협약 조인 및 협약서 교환
- 협약기간 : 필요시 해당사업 추진기간을 협약기간으로 설정
- 협약절차 : 대상업무 선정 → 협약내용에 대한 실무협의 → 협약체결여부 결정
→ 협약 체결 및 협약서 교환

□ 추진실적

-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 팔당 지역 7개 시·군간 협약 체결 : '06. 10. 13
-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서울·인천·경기도 공동 합의문 협의

□ 향후계획

-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단체와 협약 추진
- 충북·강원도 간 한강수계 및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구축

오염원 조사를 통한 자료통합관리체제 구축

팔당 유역 7개 시·군 지역에 대한 실질적 기초 오염원 조사를 통해 자료통합 관리체제 구축

□ 추진개요

- 용역명 : 팔당지역 오염원 실태조사 및 연구 용역
 - ※ '06년 기준으로 팔당 7개 시·군에 대한 오염원 조사
- 용역기간 : '06. 11. ~ '07. 5.(6개월간)
- 예산액 : 206백만원(도비)
- 용역수행 예정기관 : 경기개발연구원
 - ※ 용역자료를 이용한 웹기반의 관리프로그램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별도추진

□ 추진실적

- 팔당지역 오염원 실태조사 및 연구관련 실무 간담회 개최 : '06. 7. 20
- 팔당지역 오염원 실태조사 연구용역 기본계획 수립 : '06. 8. 2
- 용역 계약 체결 및 용역 착수 : '06. 11월

□ 활용계획

- 팔당지역 7개 시·군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관련, 오염부하량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 환경 관련 통계(전국 오염원 조사 등) 작성시 활용(기초 통계와 호환)

민간 환경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한강수계 수질보전 활동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상수원 수질보전

□ 추진개요

- 지원근거 : 한강수계법 제27조(민간 수질감시활동 지원)
- 지원대상 : 15개 시·군 37개 단체
- 사업비 : 300백만원(한강수계기금)
- 사업내용
 - 상수원 수질보전 홍보·교육 및 각종 캠페인 전개 등 대 주민환경 의식 제고를 위한 실천적인 사업
 -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모니터 활동, 기타 한강 상수원 수질개선에 관련된 사업

□ 추진실적

- 환경정화활동 및 환경체험 20단체 2,500명

- 환경홍보 캠페인 및 교육 25단체 85회
- 팔당호 생태계 조사 및 환경감시(감시단 구성) 등 16단체 55회

□ 향후계획

- NGO 단체 등 환경단체의 적극적인 활동 지원 강화
- '06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친환경적 유역관리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팔당지역 7개 시·군에 대한 중복규제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추진개요

-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에 따른 중복규제 완화 지속 추진
 -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등과 적극 협조, 법령개정 강력 요구
 - 각종 규제에 따른 피해 사례 파악 중앙 부처, 관내 의원 등에 홍보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
 - 팔당특별대책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법」 등 규제 관련법 개정과 병행하여 의무제 추진
- 계획적인 지역개발 유도
 -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에 승인된 총량범위 내에서 친환경적인 기업유치 등 지역개발 추진

□ 추진실적

- 「한강수계법」 개정에 따른 의견제시 : '06. 8. 25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정비발전지구 도입(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지역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 현 임의제하에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의무제로의 개정은 향후 정비발전지구 논의 결과에 따라 추후 한강법 개정 시 논의
- '06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시 규제개선 건의 : '06. 10. 17
-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따른 오염총량제 실시 지역에 대한 정비발전지구 포함 의견 제시

□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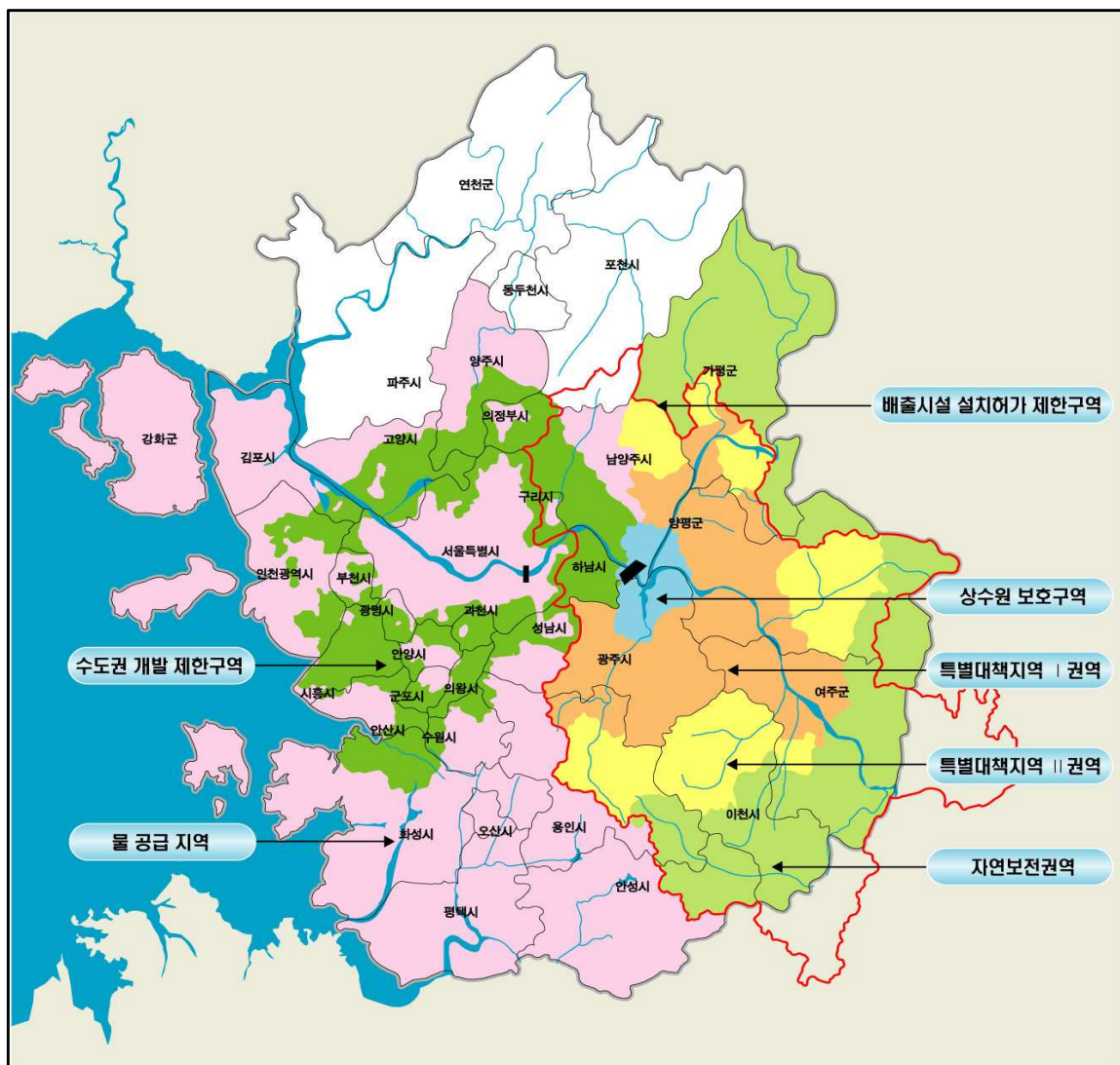
○오염총량제 실시와 관련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추진

IV. '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지적사항 없음

V. 부 록(참고자료)

<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현황도 >



구 분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54.8%)		상수원보호구역 (4.1%)	수변구역 (3.9%)
		I 권역	II 권역		
지정 면적	3,838.2km ² (’82년 12월)	1,248.9km ² (32.7%) (’90년 7월)	853.0km ² (22.1%) (’90년 7월)	158.8km ² (’75년 7월)	149.68km ² (’99년 9월)
대상 지역	남양주시 일부 광주시, 용인시 일부 안성시 일부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남양주시 일부 광주시 일부 용인시 일부 여주군 일부 양평군 일부 가평군 일부	남양주시 일부 용인시 일부 이천시 일부 여주군 일부 양평군 일부 가평군 일부	남양주시 일부 광주시 일부 양평군 일부 하남시 일부	남양주시 일부 광주시 일부 용인시 일부 양평군 일부 가평군 일부 여주군 일부 춘천·원주·충주

<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세부 현황 >

구 분		시 · 군명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8개 시·군		○ 용인, 남양주, 이천, 광주, 여주, 하남, 양평, 가평 - 면적 : 2,057.487km ²
상수원보호구역 12개 시·군(13개소)		○ 수원, 고양, 의정부, 남양주, 평택, 파주, 광주, 하남, 여주, 포천, 연천, 양평 - 면적 : 206.3km ²
팔당상수원보호구역 4개 시·군		○ 남양주, 하남, 광주, 양평 - 면적 : 158.803km ²
한강수계 수변구역 6개 시·군		○ 남양주, 용인, 여주, 광주, 가평, 양평 - 면적 : 149.68km ²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2,101.9km ²)	I 권역 (6시·군)	○ 남양주, 용인, 광주, 여주, 가평, 양평 - 면적 : 1,248.9km ²
	II 권역 (6시·군)	○ 남양주, 용인, 이천, 여주, 가평, 양평 - 면적 : 853.0km ²
물이용부담금 (22개 시·군)		○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 용인, 의정부, 남양주, 평택, 광명, 시흥, 군포, 화성, 구리, 김포, 안성, 하남, 의왕, 양주, 오산, 과천 ※ 부과대상 : 팔당호 및 팔당댐 하류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으로 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자

※ 임진강 수계(4개 시·군) : 동두천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

<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 중복규제 현황 >

- ☐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 팔당호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 I·II 권역으로 지정 고시(환경부장관)하여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등 오염원의 입지를 규제
- ☐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제5조)
 -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한 지역을 지정·고시하여 건축물 등 공작물의 신·증축, 입목의 재배·벌채,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천 금지하고, 소규모 농가주택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 수변구역(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해 팔당호,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 일부구간의 양안(특별대책지역 1km, 그 외 500m)을 지정·고시
 - 음식점·숙박시설·목욕장·관광숙박업·축사, 폐수배출시설 등 금지
 - ※ 단, 팔당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은 예외적으로 허용(하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등)
- ☐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4년제 대학, 연수시설, 판매용건축물(15,000㎡이상), 업무용건축물(25,000㎡이상), 공공청사 설치, 공장총량 적용, 택지·관광지·공업용지 면적 규제
- ☐ 자연보전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공장의 설치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기업 신·증설 금지
(단, 건축자재·첨단공장 1천㎡이내 허용)
 - 중소기업 : 산업단지·공업지역은 3천㎡ 이내 도시형공장 허용
- ☐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 주택 등 구조물의 신·증축, 토지형질변경 등을 원칙적 금지하고, 관할 군부대장 등이 군사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용
- ☐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건축물의 신·증축,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

<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 행위규제 세부내용 >

구 분	상 수 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2,101.9km ²)		수 변 구 역
		I 권역	II 권역	
면 적	158.8km ²	1,248.9km ²	853.0km ²	149.68km ²
공 장	입지불허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불허. 다만, 소규모배출 시설로 전량위탁시 가능 · 200m²/일 이상 폐수배출시설 입지 불허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불허. 다만, 소규모배출시설로 전량위탁시 가능 · 기타시설은 BOD 30ppm이하 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 시 입지허용	· 입지불허
숙박업	입지불허	· 연면적 400m²이상 입지불허 -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가능	· BOD 20ppm 이하 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허용	· 입지불허 (단, 특별대책지역외 수변구역에서는 BOD 10ppm이하 처리 또는 공공처리시설에 유입·처리시 입지허용)
식품 접객업	입지불허	· 연면적 400m²이상 입지불허 -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가능	· 규모에 관계없이 BOD 20ppm 이하 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허용	· 입지불허 (단, 특별대책지역외 수변구역에서는 BOD 10ppm이하 처리 또는 공공처리시설에 유입·처리시 입지허용)
축산시설	입지불허	· 허가대상시설 입지불허 (우사 : 450m²이상, 돈사 : 500m²이상) · 신고시설은 입지가능 (우사 : 450m²미만, 돈사 : 500m²미만)	· 입지허용 - 허가대상 : BOD 및 SS 50ppm 이하로 처리 - 신고대상 : BOD 350ppm 이하로 처리	· 입지불허 (단, 특별대책지역외 수변구역에서는 오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내에서 BOD 10ppm이하 처리하거나 전량 퇴비화 또는 공공처리시설에 유입·처리시 입지허용)
양식장	입지불허	· 신규입지 및 면허기간 연장불허	· 신규입지 및 면허기간 연장 불허	-
어업 유·도 선업	무동력선 행위가능 (어업)	· 신규면허·허가·신고(증설포함) 불허	· 입지가능	· 입지가능
일 반 건축물	주택(신축) (100m ² 이하, 영농시설 공공시설 제한적 허용)	· 연면적 800m²이상 입지 불허 -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 가능 · 공공복리시설은 입지 허용 - BOD 20ppm이하처리시 입지가능	· 규모에 관계없이 입지허용 - BOD 20ppm 이하 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허용	· 규모에 관계없이 입지허용 - BOD 10ppm이하 처리 (오수처리시설) ※ 오분법 시행규칙 제9조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불허	· 매립시설, 폐기물처리업, 재활용 신고자 입지불가. 다만, 생활폐기물, 도자기재생, 폐목재 처리시설 가능	· 매립시설, 폐기물처리업, 재활용 신고자 입지불가. 다만, 생활폐기물, 도자기재생, 폐목재 처리시설 가능	-
골프장 골프연습장	입지불허	· 입지불허('95. 2. 9부터)	· 입지불허('95. 2. 9부터) 단, 천연잔디 골프연습장은 저감시설 설치 후 가능	-
광물 채굴·채석	입지불허	· 입지불허. 단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의 석채채굴은 사전협의 후 가능	· 입지불허. 단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의 석채채굴은 사전협의 후 가능	-
집단묘지	입지불허	· 공설묘지와 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신규입지 불허	· 공설묘지와 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신규입지 불허	-